

대전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220712 판결 [건물명도 등]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22071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가단131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범

변론종결 2024. 4. 25.

판결선고 2024. 7. 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가단131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제1심 공동피고 B은 2022. 10. 23.부터,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2022. 12.

18.부터 각 위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는바, 위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1)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그 송달통지서에는 2023. 1. 30. 14:24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 본인이 위 서류들을 송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2)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여러 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23. 3. 16.에 발송송달하였고, 2023. 3. 28.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제1심 판결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3.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23. 9. 21. 제1심 법원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거나 조사하지 않았고, 제1심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재판진행 과정 중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었고, 이 사건 주소지에 인터넷 해지를 위해 방문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위 서류들을 수령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23. 1. 13.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직접 위 서류들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것만으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아버지가 위 서류들을 수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일수, 판사 설승원, 판사 윤지숙